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3.5.29.(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4월 1일

○ 회부일자 : 2003년 4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211회 및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3. 4. 17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보류

○ 2003. 5. 23 :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질의답변 및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권 기 수)

가. 제안이유

-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되어 전기설계·감리업 관련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시·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른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전기설계·감리업 등록신청 등 관련 수수료 신설

- 종합 설계업 등록 신청 : 1건당 50,000원
- 종합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 1건당 45,000원
- 전문1종 설계업 등록 신청 : 1건당 30,000원
- 전문1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 1건당 25,000원
- 전문2종 설계업 등록 신청 : 1건당 20,000원
- 전문2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 1건당 15,000원
- 종합 감리업 등록 신청 : 1건당 50,000원
- 종합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 1건당 45,000원
- 전문 감리업 등록 신청 : 1건당 30,000원
- 전문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 1건당 25,000원
- 설계·감리업 변경등록신청(등록사항 변경) : 1건당 5,000원
- 설계·감리업 등록증 재발급 : 1건당 5,000원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충청북도계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업 관련사무가 시·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던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신설되는 별표2의 제2호 나목의 신설하는 (11) 및 (12)의 “전기설계·감리업”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으로 표기하여야 함에도 전기설계·감리업으로 표기한 이유와 수수료의 산정근거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 안 요 지

가. 수정이유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 관련사무의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나, 상위법에 없는 용어를 사용하여 주민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법에서 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전기설계·감리업”을
⇒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으로 수정
(별표2의 제2호 나목 (11), (12))

7. 심 사 결 과 : 수정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 본 안건은 제21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나 조례안의 점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지연과 수수료산정 등에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으나,

2003. 5. 23(금) 제213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경제통상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회기에서 김정복 위원이 수정 동의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수정가결함.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4
----------	----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되어 전기설계·감리업 관련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시·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른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전기설계·감리업 등록신청 등 관련 수수료 신설
- 종합 설계업 등록 신청 : 1건당 50,000원
 - 종합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 1건당 45,000원
 - 전문1종 설계업 등록 신청 : 1건당 30,000원
 - 전문1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 1건당 25,000원
 - 전문2종 설계업 등록 신청 : 1건당 20,000원
 - 전문2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 1건당 15,000원
 - 종합 감리업 등록 신청 : 1건당 50,000원
 - 종합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 1건당 45,000원
 - 전문 감리업 등록 신청 : 1건당 30,000원
 - 전문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 1건당 25,000원
 - 설계·감리업 변경등록신청(등록사항변경) : 1건당 5,000원
 - 설계·감리업 등록증 재발급 : 1건당 5,000원

3. 의안전문 : 따로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 나목에 (11)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1) 전기설계·감리업(등록·양도·양수·합병) 신청 등			
㉑	종합 설계업 등록 신청	1건	50,000
㉒	종합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45,000
㉓	전문1종 설계업 등록 신청	1건	30,000
㉔	전문1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25,000
㉕	전문2종 설계업 등록 신청	1건	20,000
㉖	전문2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15,000
㉗	종합 감리업 등록 신청	1건	50,000
㉘	종합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45,000
㉙	전문 감리업 등록 신청	1건	30,000
㉚	전문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25,000
(12) 전기설계·감리업 변경등록 신고			
㉑	변경등록(상호·소재지·대표자·기술인력)	1건	5,000
㉒	등록증 재발급	1건	5,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증명등수수료요일표 (단위 : 원)		제증명등수수료요일표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 액	구 분	기준 요 액
2. 인가,허가,신고,신청, 등록 시설확인 등 가. (생략) 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 (10) (생략) <u><신 설></u>		2. 인가,허가,신고,신청, 등록 시설확인 등 가. (현행과 같음) 나. ----- (1) ~ (10) (현행과 같음) <u>(11) 전기설계·감리업(등록·</u> <u>양도·양수·합병)신청 등</u> ㉓ <u>종합 설계업 등록 신청</u> 1건 50,000 ㉔ <u>종합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u> <u>합병신고</u> 1건 45,000 ㉕ <u>전문1종 설계업 등록 신청</u> 1건 30,000 ㉖ <u>전문1종 설계업 양도·양수</u> <u>또는 합병신고</u> 1건 25,000 ㉗ <u>전문2종 설계업 등록 신청</u> 1건 20,000 ㉘ <u>전문2종 설계업 양도·양수</u> <u>또는 합병신고</u> 1건 15,000 ㉙ <u>종합 감리업 등록 신청</u> 1건 50,000 ㉚ <u>종합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u> <u>합병신고</u> 1건 45,000 ㉛ <u>전문 감리업 등록 산청</u> 1건 30,000 ㉜ <u>전문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u> <u>합병신고</u> 1건 25,000 <u>(12) 전기설계·감리업 변경등록 신고</u> ㉝ <u>변경등록(상호·소재지·대표</u> <u>자·기술인력)신고</u> 1건 5,000 ㉞ <u>등록증 재발급 신청</u> 1건 5,000	
<u><신 설></u>			

관계 법령 발췌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설계업”이라 한다)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감리업”이라 한다)

② - ⑤ (생 략)

제16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 등) ①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2. 설계업자인 법인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 - ③ (생 략)

제26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또는 공사감리업(이하“감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감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27조(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①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자·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된 사항을 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9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설계업(감리업)양도·양수신고서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법인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설계업(감리업)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도·양수

계약일 또는 법인합병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2 (생 략)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3. 4. 17.

제안자 : 김정복 위원외

1. 수정이유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 관련사무의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나, 상위법에 없는 용어를 사용하여 주민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법에서 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전기설계·감리업”을
⇒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으로 수정
(별표2의 제2호 나목 (11), (1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2의 제2호 나목 (11), (12) 중 “전기설계·감리업”을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으로 한다.

조문대비표

□ 조례명 : 충청북도계증명등수수료정수조례

개 정 안			수 정 안				
계증명등수수료요율표			계증명등수수료요율표				
(단위 : 원)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구 분	기준	요액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시설향인 등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시설향인 등				
가. (현행과 같음)			가. (개정안과 같음)				
나. -----			나. -----				
(1) ~ (10) (현행과 같음)			(1) ~ (10) (개정안과 같음)				
(11) 전기설계·감리업(등록·양도·양수·합병)신청 등			(11)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등록·양도·양수·합병)신청 등				
㉑ 종합 설계업 등록 신청	1건	50,000	㉑ ~ ㉒ (개정안과 같음)	개 개 정 전 안 안 과 과 갈 갈 용 용			
㉒ 종합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45,000					
㉓ 전문1종 설계업 등록 신청	1건	30,000					
㉔ 전문1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25,000					
㉕ 전문2종 설계업 등록 신청	1건	20,000					
㉖ 전문2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15,000					
㉗ 종합 감리업 등록 신청	1건	50,000					
㉘ 종합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45,000					
㉙ 전문 감리업 등록 신청	1건	30,000					
㉚ 전문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25,000					
(12) 전기설계·감리업 변경등록 신고					(12)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 변경등록 신고		
㉑ 변경등록(상호·소재지·대표자·기술인력)신고	1건	5,000			㉑, ㉒ (개정안과 같음)		
㉒ 등록증 재발급 신청	1건	5,000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 나목에 (11)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1)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			
(등록·양도·양수·합병) 신청 등			
㉓	종합 설계업 등록 신청	1건	50,000
㉔	종합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45,000
㉕	전문1종 설계업 등록 신청	1건	30,000
㉖	전문1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25,000
㉗	전문2종 설계업 등록 신청	1건	20,000
㉘	전문2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15,000
㉙	종합 감리업 등록 신청	1건	50,000
㉚	종합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45,000
㉛	전문 감리업 등록 신청	1건	30,000
㉜	전문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25,000
(12)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 변경등록 신고			
㉝	변경등록(상호·소재지·대표자·기술인력)	1건	5,000
㉞	등록증 재발급	1건	5,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단위 : 원)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구 분	기준	요액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시설확인 등 가. (생략)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시설확인 등 가. (현행과 같음)		
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 (10) (생략) <신 설>		나. ----- (1) ~ (10) (현행과 같음) (11)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 (등록·양도·양수·합병)신청 등		
		㉓ 종합 설계업 등록 신청	1건	50,000
		㉔ 종합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45,000
		㉕ 전문1종 설계업 등록 신청	1건	30,000
		㉖ 전문1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25,000
		㉗ 전문2종 설계업 등록 신청	1건	20,000
		㉘ 전문2종 설계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15,000
		㉙ 종합 감리업 등록 신청	1건	50,000
		㉚ 종합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45,000
		㉛ 전문 감리업 등록 신청	1건	30,000
		㉜ 전문 감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25,000
		(12)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업 변경등록 신고		
		㉝ 변경등록(상호·소재지·대표 자·기술인력)신고	1건	5,000
		㉞ 등록증 재발급 신청	1건	5,000
<신 설>				

관계법령 발췌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특별시장·광역시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설계업”이라 한다)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감리업”이라 한다)

② - ⑤ (생 략)

제16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 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2. 설계업자인 법인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 - ③ (생 략)

제26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또는 공사감리업(이하“감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감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27조(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①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자·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된 사항을 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9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설계업(감리업)양도·양수신고서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법인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설계업(감리업)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도·양수계약일 또는 법인합병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2 (생 략)